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 일시	2018. 4. 18(수) / 총 3매 (본문 1매 참고 2매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감사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김종학, 사무관 이정복, 주무관 주광돈 • ☎ (044)201-3102, 3115
보도 일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조현민 전무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 논란 - 국토부 즉시 감사 착수 - 김현미 장관, “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한 감사” 지시 -

- 국토교통부 장관(김현미)은 언론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관련 문제에 대하여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철저히 조사토록 지시하였습니다.
- 김현미 장관은 조현민 전무 재직 당시 두 차례의 대표이사 변경 건(2013.3.20, 2016.2.18), 한차례의 사업범위 변경 건(2013.10.8)에 대한 심사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조현민 전무가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
 - 담당과(항공산업과)에서 보도참고자료(4.17)에 제도상 지도·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는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, 그동안 변경심사 과정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지시하였고,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[뉴스1, 4.18.(수)] >

- ◆ 조현민 불법 등기이사 때 신규사업 면허취득... 난처해진 국토부
 - 미국국적의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 시 국토부로부터 화물 운송사업 면허 취득, 외국인의 국적 항공사 등기이사 재직은 운송사업 면허 결격사유로 국토부의 부실감독 등 언급
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이정복 사무관(☎ 044-201-310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① 외국인 임원관련 면허 결격사유(항공사업법)

제9조(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1. 「항공안전법」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6.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

<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>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
2.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

3.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

5.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

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.

② 면허 취소규정

제28조(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·제2호·제4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

4. 항공운송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가. 제9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

나.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항공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

3 변경면허 관련 규정

제7조(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)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면허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, 허가, 변경면허 및 변경허가의 절차, 면허 등 관련 서류 제출,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<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>

⑦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면허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면허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

1. 상호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2. 대표자
3. 주소(소재지)
4. 사업범위